

의안번호	제 218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2 월 22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연월일 : 2008년 2월 2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등의 제도화로 축제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
- 우수축제 육성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지역축제의 정의 (안 제2조)
- 도 지정축제의 선정 (안 제4조 내지 제7조)
 - 충청북도지정축제 :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내지 제14조)
 - 기 능 :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
 - 인 원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환경국장
 -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대표,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4. 조 례 안 : 불 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 불 임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축제의 선정·육성과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3조(축제의 육성)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충청북도 지정축제

제4조(충청북도 지정축제) ①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해마다 시·군이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에 의한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지정축제(이하 “도 지정축제”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도지사가 선정하는 도 지정축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최우수축제
2. 충청북도 우수축제
3. 충청북도 유망축제

제5조(도 지정축제 신청) 시장·군수는 지역축제를 도 지정축제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축제의 평가) ① 도지사는 축제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축제평가단은 시장·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대상 축제는 제5조에 의한 도지정축제 신청을 한 지역축제 중에서 축제평가단,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7조(축제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사항
2. 도 지정축제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환

경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출타 등을 이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관광진흥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군 소속 행사관련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와 축제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에서 지역축제로 선정·지원하고 있는 축제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충청북도 지정축제 신청서(제5조 관련)

축 제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대표자명					
예 산 액 (단위:천원)	예산규모(안)					전년도 예산액
	계	국고	도비	시·군	기타	
축 제 개 요						
<p>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지정축제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 장 · 군 수 (인)</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